

##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 제도 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에 따라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고, 동 지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립대학,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개정('12.12.27)으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조직경계 외부에서 수행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실적을 공공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3.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13.12.31)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실적을 해당기관 목표 달성에 활용 가능
4.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수행중인 외부감축사업 등록을 통해 해당기관의 목표달성을 위한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 1.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이란?

## 가.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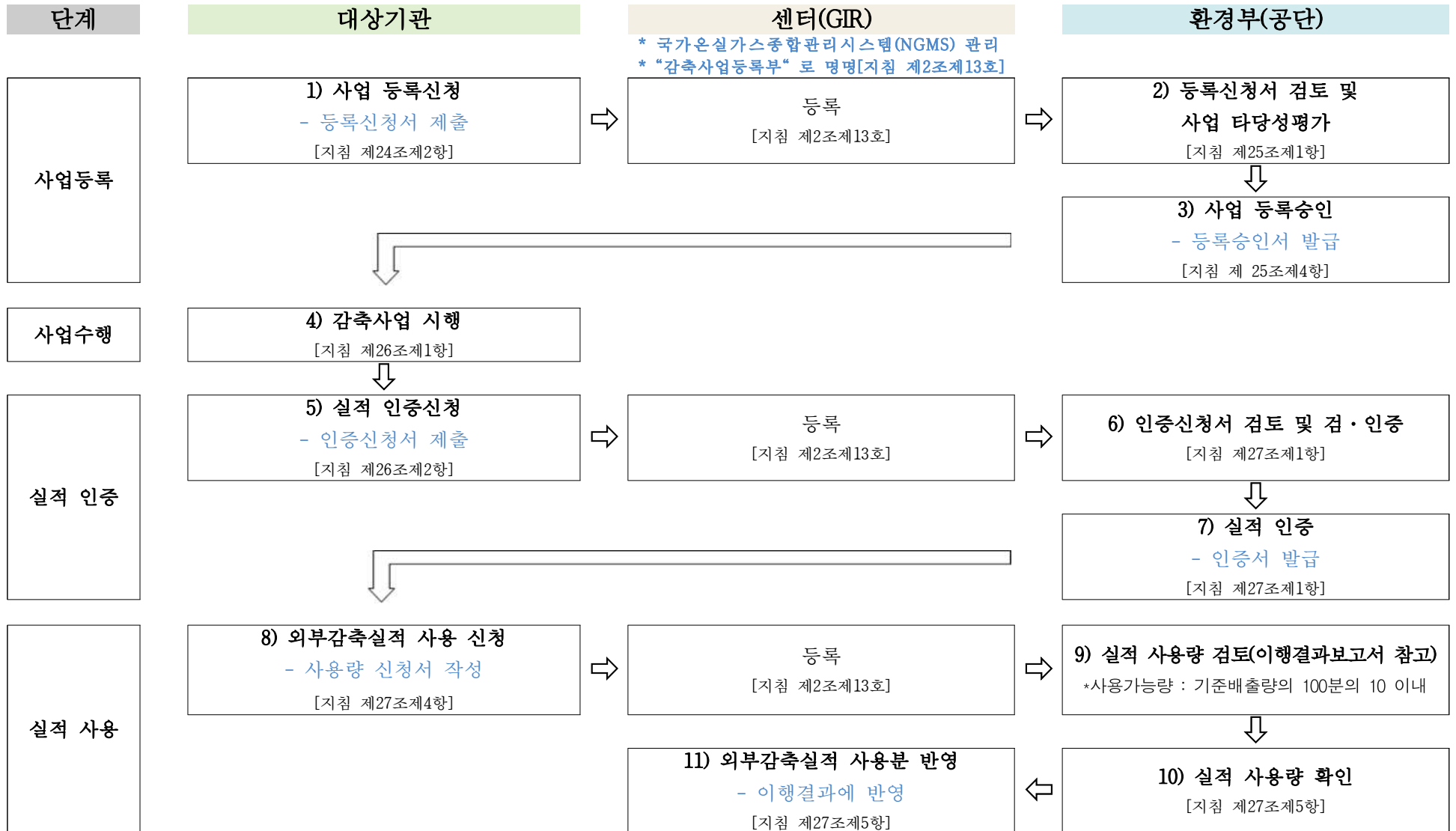
-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이 조직경계 외부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사업 중 공공목적의 사업을 의미하며, 감축사업에 투자하여 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공공부문 대상기관의 감축실적으로 가져올 수 있음
- 활용이점 :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감축목표에 대한 실적(감축량)에 기여

## 나. 법적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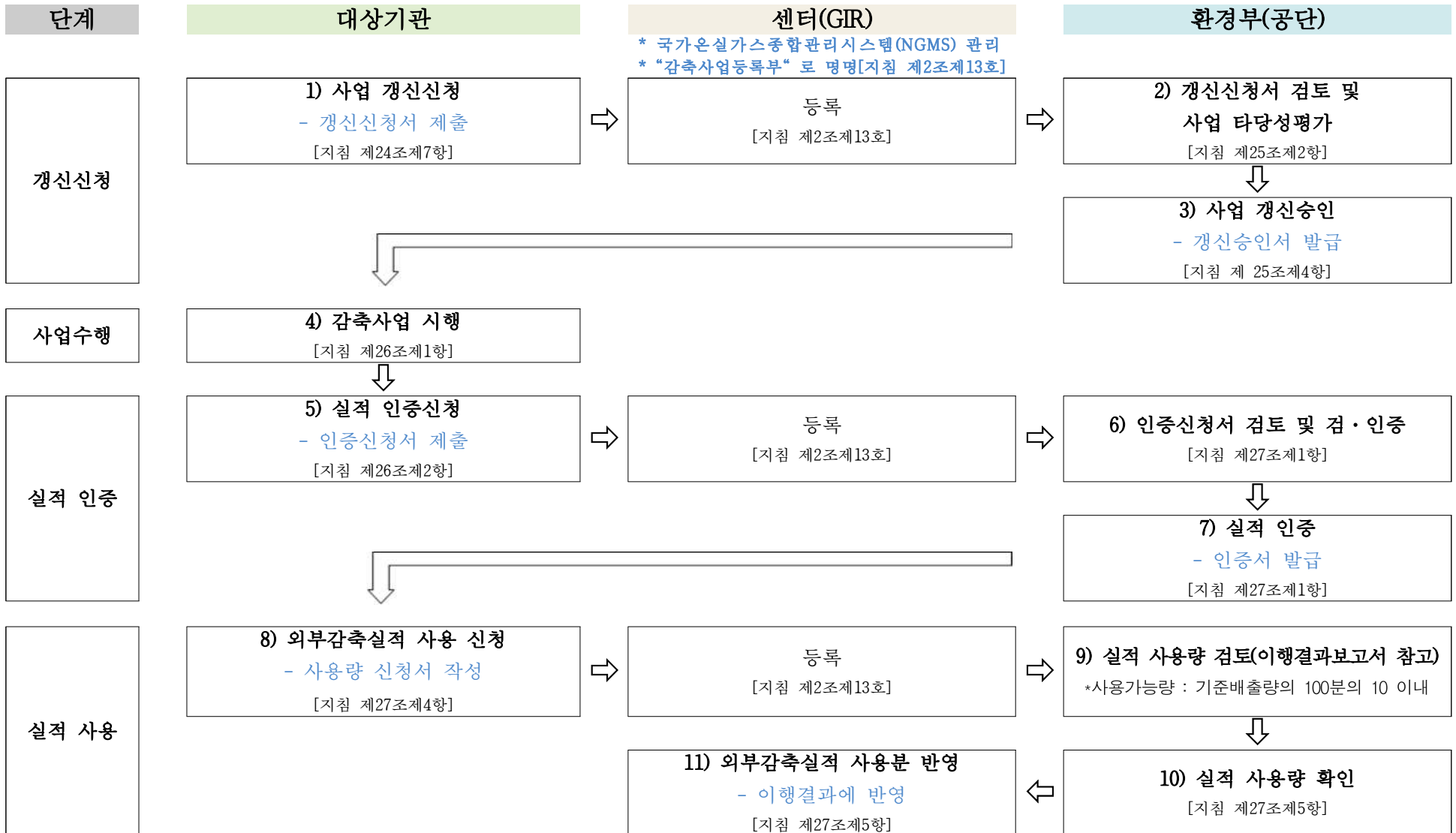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중앙행정기관 등의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⑧ 중앙행정기관 등이 해당 기관의 외부(다른 중앙행정기관 등, 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대상업체는 제외한다)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사업을 수행한 실적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목표의 이행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4조(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대상 및 등록) ②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부문의 장은 매년 9월말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감축사업등록부에서 등록(변경)신청서를 작성 후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사업기간을 갱신하여 연장하는 경우, 외부감축사업 사업기간 만료일 이전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감축사업등록부에서 갱신신청서를 작성 후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절차는 제24조에서 제27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26조(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신청) ② 외부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장이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시행 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제 제9호 서식에 따라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검·인증 및 사용) ③ 외부감축실적의 사용 한도는 제11조에 따라 해당 공공부문이 설정한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다.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목록 [지침 별표 6]**

사업유형	세부유형	대상사업	비고(방법론 번호)
신재생 에너지	전력공급(자가)	1. 태양광 에너지 도입	001
		2. 풍력 에너지 도입	
	열공급(자가)	3. 지열 에너지 도입	002
		4. 태양열 에너지 도입	003
	기타 사용	5. 신재생에너지 가로등 도입	004
에너지 효율향상	고효율 전등 교체	6. LED 가로등 설치	005
		7. 고효율 조명교체	006
	고효율 설비보급	8. 고효율 팬 보급	007
		9. 타원관열교환기 보급	
		10. 고효율 변압기 보급	
		11. 고효율 인버터 보급	
	단열 강화	12. 고효율 전동기 보급	008
		13. 옥상녹화	
	기타	그린카 보급	14. 고성능 유리설치
15. 전기 자동차 보급			010
16.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17.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 마. 업무처리절차도(갱신)



## 2. 주요 개념정리

### 가. 용어정리 [지침 제2조]

13. "감축사업등록부"란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의 등록, 감축실적 검·인증 및 사용 등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영되는 전산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
14. "사업시작일"이란 외부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사업의 감축활동을 통해 감축량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15. "사업기간"이란 외부감축사업에 대한 실적인증이 유효한 기간을 말한다
16. "수행기간"이란 외부감축사업을 통한 실제 감축량이 발생한 기간을 의미한다.
17. "감축실적 사용"이란 공공부문의 장이 외부감축인증실적을 이행결과에 반영하기 위하여 인증된 감축실적 누적량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 나.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대상시설 [지침 제2조제12호]

-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조직경계 외부에서 타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민간(일반가정)이나 상업시설
- 목표관리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시설도 외부감축사업으로 등록 가능

#### ※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제외 대상시설[지침 제9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 대상기관의 직원 관사 등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단 대학 등의 기숙사는 포함)
2. 연면적 100m<sup>2</sup> 이하 소규모 건물
3. 1년 미만 기간의 임차시설
4. 유치원·초·중·고등학교
5. 교정·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치료감호소
6. 노인·아동·장애인·부랑인·노숙인 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8.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9. 산불진화차량,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도주자 체포 또는 수용자보호관찰 대상자 호송·경비용도 차량, 장애인 전용 복지·재활 차량 및 국방·군사 활동 용도의 차량

## 다. 제도이행 시기 및 시점

구 분	이행시기	비고
등록신청(서)	(대상기관→NGMS시스템) 수시 제출 * 당해 신청 사업을 당해 실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b>매월 9월말까지 등록 신청</b> 하여야 함	지침 제24조제2항
갱신신청(서)	(대상기관→NGMS시스템) 외부감축사업 사업기간 만료일 <b>2개월 전까지</b>	지침 제24조제7항
타당성평가	(환경부·공단) 신청서 제출 후 <b>30일 이내 타당성평가를 실시</b> 하여 사업 승인 또는 반려 * 부득이한 사유 발생 등 추가검토가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지침 제25조제4항
인증신청(서)	(대상기관→NGMS시스템) <b>매년 12월말까지 제출</b>	지침 제26조제2항
검·인증	(환경부·공단) 제출된 신청서를 분기별로 검토 후 30일 이내 승인 또는 반려	지침 제27조제1항
사용신청(서)	(대상기관→NGMS시스템) <b>2월 중 제출</b>	지침 제27조제2항
사용 확인	(환경부·공단) 사용량 확인 후 이행결과 평가에 반영	지침 제27조제5항

## 라. 외부감축사업 세부내용

- 사업등록승인기준 [지침 제24조제1항]

- 1) 공공부문 대상기관이 해당 **조직경계 외부**에서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활동을 하는 사업
- 2) 외부감축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 3)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계량화가 가능한 사업**
- 4) 신청하는 대상기관의 **경제적 노력이 투입된 사업**
- 5) 타사업 및 타제도의 외부감축사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
- 6) 준공사업의 인정은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 이후 준공된 사업
- 7) 지침 [별표 6]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목록에 **해당되는 사업**

**- 사업시작일 및 사업기간**

구 분	용어	내용
사업시작일	감축설비의 설치가 완료된 후 사업을 운영하여 감축량이 발생하는 시점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준공일 이후를 의미함 ※ (참고) 외부감축사업에서 '사업시작일' 및 '사업기간'은 실제 시행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의미하며, <u>사업추진계획서의 감축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 시작일 또는 공사기간을 의미하지 않음</u>	사업시작일은 외부감축사업 감축활동이 시작하는 날이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의 날짜로 정할 수 있음 1) 사업 준공일 2) 설비설치확인일 3) 사업 보조금 교부일 4) 사업완료 후 결과보고일
사업기간	1)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운영되어 감축량이 발생 및 외부 감축사업이 인정되는 기간이며, <b>사업시작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함</b> 2) 5년 이내 중 1회에 한해 갱신을 신청하여 최대 10년 까지 적용할 수 있음	

**- 갱신승인 검토기준**

1) (유효성 여부) 갱신 신청 시 사업의 운영여부에 대한 확인자료 제출(감축활동 유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신청) 2) (최신 방법론 적용 여부) 최신 방법론이 적용된 감축량 산정 내역 3) (내구연한 고려 반영) 사업유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할 경우 사업별 내구연한에 따라 3~5년으로 갱신 검토
--

**- 준공사업 인정기준**

구 분	내용	비고
등록가능시점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 이후 준공된 사업에 한해서 등록 가능	지침 제24조제5항



구 분	개념 정리
활동데이터 모니터링	감축설비에 미터기를 장착하여 실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활동데이터를 수집하여 감축량을 산정하는 경우
방법론 산출계수 적용	활동데이터 수집이 어려워 사업 초기의 설치 정보를 통해 방법론의 계산식을 사용하여 감축량을 산정하는 경우
감축량 산정	<p>감축량의 계산은 감축량 산정틀을 이용하여 계산하며, 사업별 방법론에 따라 감축량을 산정</p> <p>감축량 산정틀은 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지침에 제시된 10가지 방법론별로 온실가스 감축량 계산방법을 포함</p> <p>(보수성 적용) 감축량의 수치 표기는 보수성을 적용하여 소수점 버림 처리 후 기록함</p> <p>- 예) 감축량 150.62톤CO<sub>2</sub>eq ⇒ 150톤CO<sub>2</sub>eq 로 표기</p>

- 보조금 구성에 따른 감축실적 배분 (협약서 제출시에만 인정)

구 분	내용	비고																			
감축실적 배분	<p>사업비는 보통 '국비, 지방비, 민간비'로 구성되며,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신청하는 대상기관이 감축실적을 가져가도록 하고 있음</p> <p>협약을 원하는 기관은 사업 신청 기관과 협의하여 감축실적 분배 비율을 정하거나 지방비(도·시비) 구성에 따라 분배할 수 있음. 단, 협약대상기관은 예산을 투자한 기관에 한함</p>	<p>예시&gt; 지방비 구성에 따라 감축량을 분배할 경우</p>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대상기관</th> <th>투자비 비율</th> <th>발생 감축량</th> <th>실적 배분량</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협약서 제출</td> <td>A도</td> <td>국비:도비:사비(민) = 70:15:15</td> <td>100kn</td> <td>A도 85kn / B시 15kn</td> </tr> <tr> <td>A도</td> <td>국비:도비:사비 = 50:50</td> <td>100kn</td> <td>A도 100kn</td> </tr> <tr> <td>협약서 미제출</td> <td>B시</td> <td>국비:도비:사비(민) = 50:30:20</td> <td>100kn</td> <td>B시 100kn</td> </tr> </tbody> </table> <p>※ 국비 및 민간비는 사업 신청 기관의 실적으로 인정됨</p>		대상기관	투자비 비율	발생 감축량	실적 배분량	협약서 제출	A도	국비:도비:사비(민) = 70:15:15	100kn	A도 85kn / B시 15kn	A도	국비:도비:사비 = 50:50	100kn	A도 100kn	협약서 미제출	B시	국비:도비:사비(민) = 50:30:20	100kn	B시 100kn
	대상기관	투자비 비율	발생 감축량	실적 배분량																	
협약서 제출	A도	국비:도비:사비(민) = 70:15:15	100kn	A도 85kn / B시 15kn																	
	A도	국비:도비:사비 = 50:50	100kn	A도 100kn																	
협약서 미제출	B시	국비:도비:사비(민) = 50:30:20	100kn	B시 100kn																	

구 분	개념 정리	비고(예시 등)
대상사업 설치위치	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보조금교부서, 설비설치확인서 등
사업시작일	준공일 또는 감축 시작일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준공계, 설비설치확인서, 결과보고서등
보조금	보조금 구성 정보가 들어있는 자료	결과보고서, 보조금교부서, 예산서 등
사업규모	시설의 용량 및 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결과보고서, 설비설치확인서, 보조금교부서 등

※ 모든 증빙자료는 공문이나 결재를 득한 자료이어야 함